

##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 297 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15. 12. 16.(수)  
발 의 자: 최병윤의원 등  
(박봉순 위원장)

### 수정이유

- 조례의 명료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### 수정주요내용

- 동 조례안 중
  - 조문 제목과 규정 내용이 불일치한 조항에 대해 조문 제목 및 내용을 수정하고,
  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였으며,
  - 법령의 위임 없이 부여되어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단체장의 권한 규정을 수정하고,
  -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을 삭제함.

##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2항 중 “1회 이상” 을 “2회” 로 한다.

안 제11조의 제목 “(위원의 해촉)” 을 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 로 하고, 안 제 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발생한 때” 을 “발생하였을 때” 로, “해촉” 은 “위촉 해제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해촉을” 을 “위촉 해제를” 로 한다.

안 제17조의 제목 “(정책결정과정 참여)” 를 “(도정 참여 확대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.

안 제20조제2항 중 “강구하여야” 를 “마련하여야” 로 한다.

안 제21조제2항 중 “발생한” 을 “발생하였을” 로 한다.

안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” 를 “위원회” 로 한다.

안 제29조제3항 중 “해촉될” 을 “위촉 해제될” 로 한다.

안 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안 제35조 본문의 “제17조제3항” 을 “제17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안 부칙 제4조는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0조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정기회는 연 <u>1회 이상</u>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0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2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위원의 해촉) <u>도지사는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<u>발생한 때에는</u> 임기 중이라도 <u>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<u>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</u></p>	<p>제11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 ----- <u>발생하였을</u> ----- <u>위촉 해제</u>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위촉 해제를</u> ---</p>
<p>제17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</p> <p>① <u>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</u>에 여성과 남성이 <u>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17조(도정 참여 확대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① · ②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p>
<p>제20조(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도지사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자활지</u></p>	<p>제20조(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

<p>원,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<u>강구하여야</u> 한다.</p>	<p>----- ----- <u>마련하여야</u> -----.</p>
<p><b>원            안</b></p>	<p><b>수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</b></p>
<p>제21조(성차별의 개선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도지사는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<u>발생한</u>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<p>제21조(성차별의 개선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발생하였을</u> ----- -----.</p>
<p>제28조(기금운용심의) <u>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</u>는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28조(기금운용심의) <u>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<u>해촉될</u> 수 있다.</p>	<p>제2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위촉 해제될</u> ----- -----.</p>

원 안	수 정 안
<p>제34조(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등)            ①·② (생략)            ③ <u>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에 대한 명칭부여 및 변경권한을 갖는다.</u>            ④ (생략)</p>	<p>제34조(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등)           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<u>&lt;삭제&gt;</u>              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
<p>제35조(단체 등 지원) 도지사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, 양성평등 문화 확산,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<u>제17조제3항</u>에 따른 민·관 거버넌스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35조(단체 등 지원) 도지사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, 양성평등 문화 확산,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<u>제17조제2항</u>에 따른 민·관 거버넌스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부칙           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」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</p>	<p>부칙            제4조 <u>&lt;삭제&gt;</u></p>